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1일

청라2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한 *빈	한 *빈 1991-12-02	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102번길 (청라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10-08